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3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명옥 · 김기웅 · 박충권
엄태영 · 이현승 · 김정재
성일종 · 박성훈 · 박성민
정연욱 · 서일준 · 김용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소지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신선식품 물류센터 직원들은 과일, 채소 등 농산물과 축산물, 해산물을 직접 손으로 검수·재포장·포장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식품위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단속과 건강진단 의무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의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게 적용되지만, 신선식품 물류센터는 농축산물 유통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어 완전 포장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보건증 의무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확인됨. 이로 인해 위생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함.

따라서 신선식품을 직접 포장, 검수, 배달하는 물류센터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식품 취급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강화, 공중보건 및 소비자 안전 확보,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장과 대규모·준대규모 유통업체에서도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의 포장, 검수,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건강진단 의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현행 법령의 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0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운영자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종업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포장, 검수 또는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포장, 검수 또는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건강진단) ① <u>총리령으로</u>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u><신 설></u>	제40조(건강진단)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 ----- ----- ----- -----. 1. <u>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u>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자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의 운영자나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종업원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포장, 검수 또는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u><신 설></u>	

<u><신 설></u>	<u>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포장, 검수 또는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